

---

- 2018년 본청 재무감사(8월) -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삼척시**  
[기획감사실]

## 2018년 본청 재무감사(8월)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비고
					내역	금액(원)		
계			26건	주의 21 시정 5		1,405,800		
1	☆☆☆☆☆	2016~ 2018	강사료 지급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부적정	주의				
2	☆☆☆☆☆	2016~ 2018	국내여비 증빙자료 처리 부적정	주의				
3	☆☆☆☆☆	2017	급량비 지급 부적정	주의				
4	☆☆☆☆☆	2016~ 2018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5	☆☆☆☆☆	2018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20,000		
6	☆☆☆☆☆	2016~ 2018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7	☆☆☆☆☆	2016~ 2018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환수	353,200		
8	☆☆☆☆☆	2018	용역대가 지급 부적정	주의				
9	☆☆☆☆☆	2016~ 2018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10	☆☆☆☆☆	2016~ 2018	일상경비 집행금액 초과	주의				
11	☆☆☆☆☆	2016~ 2018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690,000		
12	☆☆☆☆☆	2018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주의				
13	☆☆☆☆☆	2016~ 2018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주의				
14	○○○○○	2016~ 2017	국내여비 증빙자료 처리 부적정	주의				
15	○○○○○	2016~ 2017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6	○○○○○	2016~ 2017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17	○○○○○	2016~ 2017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환수	117,600		
18	○○○○○	2018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19	○○○○○	2017~ 2018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225,000		
20	○○○○○	2016~ 2018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주의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비고
					내역	금액(원)		
21	○○○○○○	2016~ 2017	국내여비 증빙자료 처리 부적정	주의				
22	○○○○○○	2017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23	◇◇◇◇◇◇	2016~ 2018	국내여비 증빙자료 처리 부적정	주의				
24	◇◇◇◇◇◇	2017~ 2018	일상경비 집행금액 초과	주의				
25	◇◇◇◇◇◇	2017~ 2018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주의				
26	◇◇◇◇◇◇	2016~ 2018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주의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강사료 지급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강사료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부적정 현황

연 도	총계	원천징수 미대상	미징수	소득금액 산정 부적정	원천징수율 적용 부적정
2016~2018년	18건	2	8	6	2

※ 세부내역 불임참조

## 2. 내 용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하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87조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

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2018.4.1.부터는 100분의 70, 2019.1.1.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9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sup>1)</sup>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구분	기존	18년 4월~	19년 이후	비고
지급액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소득세+지방소득세	4.4%	6.6%	8.8%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그리고, 국세청 예규 제도46011-11575(2001.06.18)호에 따르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는 강연료·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6년 ♠♠♠ ♠♠ ♡♡ ☼☼☼ 강사 수당' 등 18건에 대한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대상임에도 원천징수 없이 수당을 지급하였고, 원고료를 제외한 강사료 금액만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소득세 등을 과소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도 잘못 적용하여 관련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1)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지급액 - (지급액 × 80/100)] × 20/100 ⇨ 4.4%(소득세+ 지방소득세)  
 ⇨ 과세최저한 : 25만원

**【처 분 요 구】**

- 향후, 강사료 지급 시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원천징수 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관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국내여비 증빙자료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연도	건수	인원	내역	비고
2016년 ~ 2018년	30건	44명	출장 입증서류 미첨부	

※ 세부내역 붙임참조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요청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및 월액여비는 제외)
- 2일 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sup>2)</sup> 1점 이상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 □ □□□ 워크숍 참석’ 등 30건에 대한 국내여비를 집행하면서 출장공무원에게 출장복명서 또는 숙박을 하였을 경우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 받아야 함에도 이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국내여비를 지출하는 등 여비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향후, 국내여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요구 및 첨부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증빙자료

-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이용 영수증 사본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급량비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급량비 지급 부적정 현황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비 고
2017.09.06	●●●●● 시간외근무자 급식비(7~8월)	257,500	2개월
2017.09.26	8월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299,000	대가증빙 없음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 집행지침 일반운영비 항목에 따르면,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적용대상이며,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 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시간 외 근무자 급식비(7~8월)' 등 2건 556천원을 집행하면서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적용대상임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대가지급을 하거나, 급식제공 2개월 치를 1건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 급량비 지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향후, 급량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역 : 1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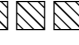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각종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행사운영비(201-03)는 행사개최를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등 각종 일반수용

비,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무관리비의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년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 ∞∞∞ 수리’ 등 19건 4,763천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반수용비로 보기 어려운 다과류를 사무관리비로 구입하였고, 행사 참가비 또는 교육비를 국내여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소모성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할 물품을 사무관리비로 구입하거나    을 사무관리비로 구입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출 예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0,000원

【제 목】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수입인지 미소화 내역

(단위 : 원)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인지 미소화액
2018.02.27	○○○○○○○○ 目目目 ●●●●● 운용 ♣♣♣♣♣ 구입	****	13,665,760	20,000

##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 ♭ ♭ ♭ 운용 ♡♡♡♡♡ 구입' 1건 13,665천원을 집행하면서 인지세 납부대상임에도 이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인지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납부한 수입인지 20,000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가. 업무추진비 과목 부적정 사용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계	1건		427,500
2017.12.2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회식	427,500

나. 업무추진비 기준액 초과 사용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계	1건		140,000
2018.04.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만찬	140,000

다.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계	5건		4,736,000
2016.12.1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회식	1,100,000
2017.01.0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회식	800,000
2017.06.2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회식	736,000
2018.01.0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회식	900,000
2018.04.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회식	1,200,000

## 2. 내 용

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집에 따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속 상근직원에게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2016.12.27.시행)

다. 또한,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회식' 1건 427천원을 집행하면서 내부공무원인 직원 회식 목적만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만찬' 1건 140천원을 집행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1인당 집행금액이 3만원으로 하향되었음에도 1인당 35천원으로 계상하여 품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으며, '\*\* 회식' 등 5건의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접대성경비 수혜자인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353,200원

【제 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국내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적 요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지급액	정당 수령액	초과 수령액	비 고
<b>계</b>	6건					353,200	
■■■■■ 인솔	①①①	2016.12.10 ~12.11	@@	184,800	130,000	54,800	1박2일
■■■■■ 참석	◎◎◎	2017.03.29 ~04.01	##	529,800	459,800	70,000	3박4일
	●●●	2017.03.29 ~04.01	\$\$	529,800	459,800	70,000	3박4일
■■■■■ 교육 참가	●●●	2017.08.02 ~08.05	%%	252,800	185,600	67,200	3박4일
■■■■■ 인솔	●●●	2017.09.03	&&	76,000	30,000	46,000	1일
■■■■■ 교육 참석	●●●	2017.10.18 ~10.21	**	210,800	185,600	25,200	3박4일
●●●●● 교육	●●●	2018.07.18 ~07.20	//	108,800	88,800	20,000	2박3일

##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및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여야 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일비와 식비는 1일당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 기준에 따르면,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할 때 합숙의 경우 일비는 등록일 및 수료일은 전액 지급하고 기타일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인솔' 등 2건에 대한 출장여비를 집행하면서 임차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교통비 및 일비를 전액 지급하였고, '●●●●●● 참석' 1건의 출장여비는 행사 주최기관에서 식사와 숙박을 제공함으로 출장여비 지급 시 제외해야 함에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며, '■■■■■■■■ ■■■■ ■■■■■■■■ 교육

참가' 등 3건은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면서 합숙인데도 일비를 전일 다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도 정당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초과 지급된 출장여비 353,200원을 환수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용역대가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용역대가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집행내용	계약자	계약금액	연납 지급금액	비고
2018.01.25	2018년 ■■■■■■■■ □□□□□□□□□□ 대행용역비 지출	(주)⓪⓪⓪⓪ ⓪⓪⓪⓪	1,800	1,800	1회 연납
2018.01.30	2018년 ▲▲▲▲▲▲▲▲ ▲▲▲▲▲▲▲▲ 대행용역비 지출	(주)★ ★ ★ ★ ★ ★ ★ ★	1,800	1,800	1회 연납
2018.01.30	2018년 ○○○○○○○○ □□□□□□□□ 대행용역비 지출	(주)☆☆☆☆ ☆☆☆☆	1,200	1,200	1회 연납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년 ■■■■■■■■■■ 대행용역' 등 3건의 계약기간 1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제공에 대한 검사를 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채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한달 이내에 1회 연납으로 계약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감독·검사 등 계약내용 이행을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

연번	지출일	집행내용	지출처	직위	지급금액(원)	비 고
계	7건				***,000	
1	2016.07.08	2016년 삼척시 ●●● ●●●●●●●● 참석수당 지급	***	시의회 의원	** ,000	
2	2016.12.16	2016년 삼척시 ●●● ●●●●●●●● 참석수당 지급	***	시의회 의원	** ,000	
3	2017.02.27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	시의회 의원	***,000	
4	2017.05.02	삼척시 □□□□□□□□□□ □□□□□□□□ 회의수당 지급	*** ***	시의회 의원	***,000	
5	2018.03.05	2018년 ▲▲▲▲▲▲▲ 참석위원 수당	*** ***	시의회 의원	***,000	
6	2018.05.08	제12회 삼척시 ○○○○○○○○ ●●●●●●● 참석위원 수당	***	시의회 의원	** ,000	
7	2018.06.28	삼척시 ○○○○○○○○○○○○ ○○○○○○○ 회의수당	***	시의회 의원	** ,000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 집행지침 일반운영비 항목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6년 삼척시 ◇◇◇◇◇◇◇◇◇◇ 참석수당 지급' 등 7건 \*\*\*천원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집행하면서 각 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에 위원을 시의회 의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실제 의회 추천을 받아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임에도 시의원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여 관련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의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일상경비 집행금액 초과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단위 : 원)

연번	지급일자	적요	지출과목	채권자	집행금액	비고
계		3건			29,077,330	
1	2016.12.30	■■■■■■■■■■■■■■■■■■■■ ☉☉ 구입	201-01	▤▤▤▤▤▤▤▤▤▤	5,621,570	
2	2017.10.18	▣▣▣▣▣▣▣▣▣▣▣▣ ▣▣▣▣ 정비	201-02	▨▨▨▨▨▨(주)	9,790,000	
3	2018.02.07	●●●●●●●● ◁◁◁ ●●●●●● ■■■■■■ 구입	201-01	□□□□	13,665,760	

## 2. 내 용

「지방회계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을 그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69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연 도	계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건수	지역개발채권 초과소화 건수	비 고
2016 ~ 2018년	27건	13	14	

※ 세부내역 붙임참조

###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

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4항 [별표 2] 면제대상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매입의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구입’ 등 13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690천원을 미소화하고, ‘◎◎◎◎◎ ◇◇◇◇◇ 및 ○○○○ 구입’ 등 14건을 집행하면서 정당액보다 초과소화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임에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690,000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명, 원)

지급일자	집행내용	지급인원	지급액	비고
계	5건		6,419,400	
2018.03.28	2018년 ■■■■■■■■■■ ■■■■ 교육 초청강사 여비 지급	1	111,400	일비 포함 지급
2018.04.23	2018년 ▽▽▽ ▽▽▽▽▽▽▽▽ 연수참가 ■■■■ 및 ○○○ 식비 지출	44	308,000	공무원 포함
2018.04.27	2018년 ⊕⊕⊕⊕⊕ ⊙⊙⊙⊙ 사업담당자(●●●●●●●●●●) 선진지 견학 여비 지급	4	1,000,000	식비 단가 1만원 적용
2018.05.02	2018년 ▽▽▽▽▽ ▮▮▮▮ 사업담당자(▮▮▮▮▮▮▮▮) 선진지 견학 여비 지급	3	1,000,000	국외 선진지 견학
2018.05.08	2018년 ■■■■■ ▴▴▴▴ 사업담당자(●●●●●●●●) 선진지 견학 여비 지급	17	4,000,000	국외 선진지 견학

##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행사실비보상금(301-09)은 1.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2.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입금하고,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국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년 □□□□ □□ □□□□ 사업담당자 선진지 견학 여비 지급' 등 5건 6,419천원을 집행하면서 국외선진지 견학 여비는 본 과목에서 집행이 불가능한데도 별도의 민간인 국외여비를 편성하는 등 세부적인 규정 검토 없이 본 과목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공무원에게 식비를 제공하거나 민간인에게 일비를 포함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등 집행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연 도	계	계약절차 미이행	서식 사용 부적정	대가증빙서류 누락	이면 승낙사항 미달인	출장자 영수인 미달인
2016년~ 2018년	87건	13	42	4	15	13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2. 내 용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 12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구입과 지출결의서)]이나 [별지 제50호서식(공사·용역 지출결의서)]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

수증을 발급받아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일반)]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2016.12.27.시행부터 200만원 이하로 상향)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교체설치’ 등 87건 73,610천원을 지출하면서 채주에 계좌입금을 할 경우 지출결의서(이면 승낙사항 포함)에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구입(물품)·공사·용역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주문·납품·검수 등 회계절차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관외출장자에게 여비 지급 시 여비지급명세서를 누락하거나 출장자 영수인을 미날인 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 관련 절차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고,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국내여비 증빙자료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연 도	건수	인원	내 역	비 고
2016년 ~ 2017년	9건	11명	출장 입증서류 미첨부	

※ 세부내역 불임참조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  
 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토록 요  
 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및 월액여비는 제외)
- 2일 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sup>3)</sup> 1점 이상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업무협의’ 등 9건에 대한 국내여비를 집행하면서 출장공무원에게 출장복명  
서 또는 숙박을 하였을 경우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 받아야 함에도 이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국내여비를  
지출하는 등 여비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향후, 국내여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증  
빙자료 제출요구 및 첨부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3) 증빙자료

-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이용 영수증 사본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일련번호 : 15】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역

지급일	적요	수량	내용	금액(원)	지출과목	적정 지출과목
계	7건			22,708,400		
2016.12.30	♠♠♠♠♠♠♠ 운영물품 (**)구입	4	1,177,000	4,708,000	사무관리비	자산및 물품취득비
2016.12.30	♡♡♡♡♡♡♡ 운영물품 (***,****,***)구입	4	1,188,000	4,752,000	사무관리비	자산및 물품취득비
2016.12.30	◇◇◇◇◇◇◇ 운영물품 (**, ***)구입	4	1,014,200	4,056,800	사무관리비	자산및 물품취득비
2016.12.30	♣♣♣♣♣♣♣ 운영물품 (**, ***)구입	4	1,010,900	4,043,600	사무관리비	자산및 물품취득비
2017.03.30	♠♠♠♠♠♠♠ ♥♥♦♦♦♦ 구입	10	224,000	2,240,000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2017.09.28	♣♣♣♣♣♣♣ ♠♠⊙⊙⊙ 구입	10	279,800	2,798,000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2017.12.15	ⓂⓂⓂⓂⓂⓂⓂ 시상식 및 ⚙⚙⚙⚙⚙ □□□□□□□ 개최에 따른 다과류 구입	1식	음료, 과자 등	110,000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각종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등으로 집행하도록 분류하고 있으며,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사무용 잡품비,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신문·잡지·관보·팸플릿 등 구입비, TV·신문·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및 광고료, 기계·기구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사무관리비 항목에 따르면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년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운영물품 구입’ 등 4건 17,559천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소모성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할 물품을 사무관리비에서 구입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 ●●●을 사무관리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가. 업무추진비 기준액 초과 사용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계	2건		572,000
2017.04.1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관계자 만찬	244,000
2017.12.2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회식	328,000

#### 나.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계	1건		519,000
2016.07.1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회식	519,000

## 2. 내 용

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2016.12.27.시행)

나. 또한,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관계자 만찬' 등 2건 572천원을 집행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1인당 집행금액이 3만원으로 하향되었음에도 1인당 33~40천원으로 계상하여 품의하였고, '\*\* 회식' 1건의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접대성경비 수혜자인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117,600원

【제 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국내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적 요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지급액	정당 수령액	초과 수령액	비 고
계	2건					117,600	
2016년 ◆◆◆◆◆◆ ◇◇◇◇◇ 실무교육	◇◇◇	2016.11.17 ~11.18	ⓂⓂ	181,000	105,000	76,000	1박2일
◆◆◆◆ ●●●● 사용협의	○○○	2017.02.20	◎◎	106,000	64,400	41,600	1일

###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8조(출장공무원) 및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여야 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일비와 식비는 1일당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6년 ■■■■■■■■■■ ■■■■■■■■■■ 실무교육' 등 2건에 대한 출장여비를 집행하면서 행사주최기관에서 식사와 숙박을 제공함으로써 출장여비 지급 시 제외해야 함에도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출장기간이 1일임에도 일비와 식비를 2일분 지급하는 등 정당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초과 지급된 출장여비 117,600원을 환수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8】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지출일	집행내용	지출처	직위	지급금액	비고
2018.01.25	삼척시 ○○○○○○ 참석수당	***	시의회 의원	** ,000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 집행지침 일반운영비 항목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7년 ■■■■ ■■■■ 임차’ 등 5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225천원을 미소화하고, ‘○○○ ●●●●시스템 본인확인을 위한 안심본인인증서비스 시행’ 1건을 집행하면서 정당액보다 5천원 초과 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225,000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연 도	계	서식 사용 부적정	이면 승낙사항 미달인
2016년 ~ 2018년	23건	17	6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2. 내 용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 12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구입과 지출결의서)]이나 [별지 제50호서식(공사·용역 지출결의서)]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별

지 제45호서식(일반)]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2016.12.27.시행부터 200만원 이하로 상향)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의 ▣ ▣▣▣ 제작설치' 등 23건 40,385천원을 지출하면서 채주에 계좌입금을 할 경우 지출결의서(이면 승낙사항 포함)에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구입(물품)·공사·용역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주문·납품·검수 등 회계절차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계서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 관련 절차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고,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국내여비 증빙자료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연 도	건수	인원	내 역	비 고
2016년 ~ 2017년	6건	11명	출장 입증서류 미첨부	

※ 세부내역 불임참조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  
 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토록 요  
 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및 월액여비는 제외)
- 2일 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sup>4)</sup> 1점 이상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운영 ●●●● 지원건의’ 등 6건에 대한 국내여비를 집행하면서 출장공무원에게 숙박을 하였을 경우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 받아야 함에도 이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국내여비를 지출하는 등 여비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향후, 국내여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요구 및 첨부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증빙자료

-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이용 영수증 사본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일련번호 : 22】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역

지급일	적 요	수량	단가	금액(원)	지출과목	적 지출과목
2017.05.29	♣♣♣♣♣♣ ♡♡♡♡♡ 구입	1	330,000	330,000	사무관리비	자산및 물품취득비

##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



【일련번호 : 23】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국내여비 증빙자료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연 도	건수	인원	내역	비고
2016년 ~ 2018년	10건	18명	출장 입증서류 미첨부	

※ 세부내역 불임참조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요청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및 월액여비는 제외)
- 2일 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sup>5)</sup> 1점 이상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7년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 공모심사’ 등 10건에 대한 국내여비를 집행하면서 출장공무원에게 출장복명서 또는 숙박을 하였을 경우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 받아야 함에도 이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국내여비를 지출하는 등 여비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향후, 국내여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요구 및 첨부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증빙자료

-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이용 영수증 사본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일련번호 : 25】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단위 : 천원)

계약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3건					초과소화 80
2017.11.10	▣▣▣▣ ▣▣▣▣▣▣ 소모품 구입	##	1,000	15	-	-15
2018.05.03	▣▣▣▣▣▣▣▣▣▣▣▣ 물품 구입	%%%%%%%%	4,650	115	65	-50
2018.07.20	▣▣▣▣ ○○○○○ 소모품 구입	&&	1,000	15	-	-15

##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4항 [별표 2] 면제대상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매입의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물품구입’ 등 3건을 집행하면서 정당액보다 80천원 초과 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6】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연 도	계	서식 사용 부적정	계약서 작성 부적정	이면 승낙사항 미기재	세금계산서 미첨부
2016년 ~ 2018년	22건	9	3	3	7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2. 내 용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 12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구입과 지출결의서)]이나 [별지 제50호서식(공사·용역 지출결의서)]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별

지 제45호서식(일반)]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2016.12.27.시행부터 200만원 이하로 상향)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물품구입’ 등 22건 38,659천원을 지출하면서 채주에 계좌입금을 할 경우 지출결의서(이면 승락사항 포함)에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구입(물품)·공사·용역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주문·납품·검수 등 회계절차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계서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 관련 절차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고,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